

1. 의결주문

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전문경력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가적 사업수행이나 국가기관 간 지원·협조할 수 있도록 파견 사유를 확대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, 타 법령 개정에 따라 적용례 조항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전문경력관 파견 사유 확대(안 제19조)

전문경력관의 경우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만 가능했으나 국가적 사업수행이나 국가기관 간 지원·협조 등을 위한 경우도 파견을 허용함
나.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 조항 정비(안 제21조제2항제1호)

「공무원임용령」 제23조 개정에 따른 적용례 조항 정비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안

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”을 “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, “파견”을 “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9조(파견)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경력관을 파견할 수 있다.	제19조(파견) -----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-----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-----.
제21조(임용령의 적용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령을 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1. 임용령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중 심사위원회의 “위원장” 및 “위원”은 “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 소속 공무원(정무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)”으로 본다. 2. ~ 4. (생략)	제21조(임용령의 적용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<삭 제> 2. ~ 4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8317